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 및 문장을 정비
- 나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제한 기준 신설(안 제12조의1)
 - 위반 횟수 1회는 7일, 2회는 15일, 3회 이상은 30일 이용자격 일시 제한
- 나.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(안 제17조제10호, 제11호)
 - 10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 - 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: 50퍼센트 감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19세 이상의”를 “만 19세 이상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3세 이상~19세 미만의”를 “만 13세 이상~만 19세 미만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란”을 “이란 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.

2. “월회원”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.
제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)”을 “(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입장거부 또는”을 “입장을 거부하거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타인”을 “고성,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
3. 다른 사람에게 폭력·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흥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5.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

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1(사용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 횟수가 1회는 7일, 2회는 15일, 3회 이상은 30일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1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2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을 위반하였을 때
3.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
4.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전액 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전액 면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20퍼센트 감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중 “13세 이상”을 “만 10세 이상 만”으로, “여성에 대해서”를 “여성 :”으로, “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.”를 “10퍼센트 감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제9호”를 “제11호”로, “많”을 “높”으로 한다.

10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퍼센트 감면

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: 50퍼센트 감면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반환 한다”를 “반환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) 단,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.

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]

시설 사용료(제16조 관련)

□ 체육시설

시설명	장소 및 사용구분		사용자	사용료	
근로자 문화센터 및 근로자종합 복지회관	수 영	월회원		일 반 인	60,000원
				청 소 년	50,000원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42,000원
		일 일 회 원	개인	일 반 인	3,500원
				청 소 년	3,000원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,500원
			단체	일 반 인	3,000원
				청 소 년	2,500원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,000원
	아쿠아로빅	월회원		일 반 인	60,000원
				청 소 년	50,000원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42,000원
	헬 스	월회원		일 반 인	42,000원
				청 소 년	36,000원
				노인 • 초등학생이하	24,000원
	방송댄스 다이어트댄스 요가 필라테스	월회원		일 반	36,000원
	요 가	월회원		일 반	36,000원
	탁 구	월회원		일 반	30,000원
		일일회원			2,500원

- ※ 시설 사용료는 1일 1회 3시간 기준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불가하며 강습시간은 종목별로 상이하다.
- ※ 위 종목 외 체육, 문화, 청소년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.
- ※ 사용일수 조정 시 기준금액 내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문화강좌 시설

시설명	프로그램 명	수강료
근로자 문화센터	문화 웰빙 강좌	10,000원 ~ 50,000원
• 위 수강료는 월단위 수강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~주5회 기준임 •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•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 할 수 있다.		

□ 기타시설

시설명	장 소		사용기준	기 본 사용료	비 고
근로자 문화 센터	기본 시설	강 당	평일주간 1회 (4시간이내)	60,000원	• 4시간이상 초과시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%가산한다. • 토요일,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 •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		야 외 무 대	"	30,000원	
	부대 시설	냉·난 방 (강당)	• 냉방 1회 (4시간이내) • 난방 1회 (4시간이내)	40,000원	•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,000원을 가산한다.

※ 주간사용은 09:00 ~ 18:00 운용시간 중 “4시간” 이내 사용금액임.

※ 야간사용은 18:00 ~ 22:00까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 <u>월회원</u> ”이란 1개월 입장으로 주1~6(월~토)일 사용하는 회원을 말한다. 3. “일반인”이란 19세 이상의 자 중에서 학생·군인·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 4. “청소년”이란 중·고·대학생 또는 13세 이상~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5. “노인”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6.·7. (생략) 8. “ <u>월 사용료</u> ”란 지도자 수강료 포함 금액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 <u>월회원</u> ”이란 시설의 이용을 1개월 단위로 허가받은 회원을 말한다. 3. ----- 만 19세 이상인 ----- -----. 4. ----- ----- 만 13세 이상~만 19세 미만인 --. 5. ----- 이란 만 ----- -----. 6.·7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제4조(사업) 센터 및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제4조(사업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
제12조(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) ① (생략)	제12조(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술 취한 사람

2. (생략)

3. 위험한 물건을 가진 자

4.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

<신설>

<신설>

② -----

-- 입장을 거부하거나 -----
---.

1.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

2. (현행과 같음)

3. 다른 사람에게 폭력·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흥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

4. 고성,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----

5. 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

제12조의1(사용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 횟수가 1회는 7일, 2회는 15일, 3회 이상은 30일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.
1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	2. <u>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 간을 위반하였을 때</u> 3. <u>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 는 경우</u> 4. <u>그 밖에 센터 및 회관의 원활 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 다.</u>
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<u>사용료</u> 를 감면 할 수 있다.	제17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 <u>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</u> ----- -----.
1.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<u>경우</u>	1. ----- ----- <u>경우 : 전액 면 제</u>
2.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<u>경우</u>	2. ----- ----- <u>경우 : 전액 면제</u>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8. 1인 2종목 이상 신청할 <u>경우</u>	8. ----- <u>경우 : 20퍼센트 감면</u>
9. 수영장을 이용하는 <u>13세 이 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</u>	9. ----- <u>만 10세 이상 만 ----- 여성: -----</u>

선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
감액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10.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
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
면율이 가장 많은 하나만 적
용한다.

제18조(사용료 반환) ① 납부된
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
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
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
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
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
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

----- 10퍼센트 감
면

10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
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
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: 50
퍼센트 감면

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른 한부모 가족 : 50퍼센트 감
면

12. ----- 제11호-----

----- 높-----
-----.

제18조(사용료 반환) ①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
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
미사용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
하지 않는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

하고,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 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<u>반환 한다.</u> 2. ~ 4. (생 략) 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에 <u>시행에</u>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반환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30조(이용료 등)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,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·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.

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
나. 일자리·문화·교육·복지·주택·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
다.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2. 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3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4. 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언 태
	담 당	김 완 수
	담 당 자	김 경 희 (480-6212)